

KBIZ 중소기업연구소

# 정책브리프

Vol 29 | 2022.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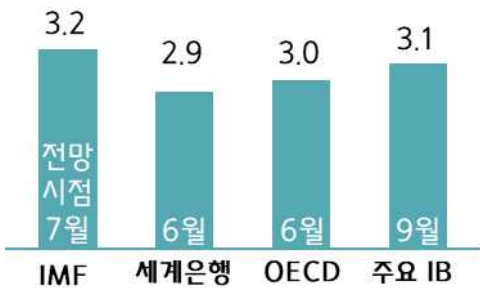
## Contents

|                                    |   |                     |   |
|------------------------------------|---|---------------------|---|
| I. 대내외 경제현황                        | 1 | III. [부록] 중소기업 경기전망 | 6 |
| II. 중소기업 정책연구                      | 2 |                     |   |
|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추진 관련 국내외 경쟁법 비교연구 |   |                     |   |

## 세계 경제

-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4월)에서  $\Delta 0.4\%p$  낮춘 3.2%로 하향 조정(7월)
  - 지속적인 하향 조정의 주요인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가운데 감행된 미국의 적극적 금리 인상 (3회 연속 0.75%p)과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경기침체
    - 美 금리, 연말 3.5~3.75%까지 인상 가능
  - 유로존은 러시아産 가스 수급 불안정성 심화 및 8월 물가상승률 (9.1%, 전년동월비) 최고치 경신, 11년만의 유럽중앙은행 금리 인상 등 경기 하방 위험 점증 (제조업 PMI < 50)
  - 고물가 지속·주요국의 긴축 기조 강화·소비지출 둔화 시 추가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 존재

[기관별 2022년 세계 경제 수정 전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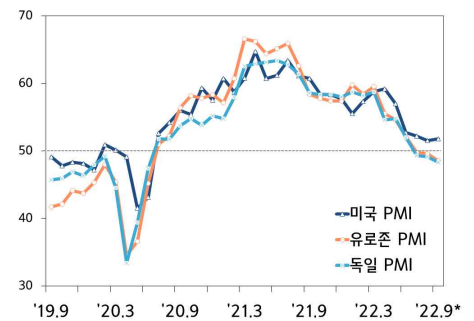
자료 : 각 기관 및 주요 IB는 국제금융센터

[세계 상품 교역량 증감률 추이] (전년동월대비, %)



자료 : 네덜란드 경제정책기획국 (CPB)

[주요국 제조업 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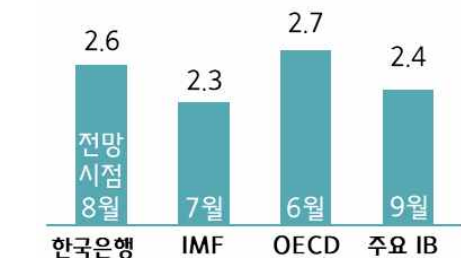


자료 : 미국금관리협회, IHS Markit \*예측치

## 국내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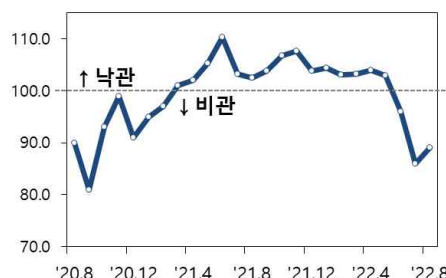
- '22년 한국 성장률도 빠른 물가 상승과 무역적자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향 조정 (한국은행  $\Delta 0.1\%p$ , IMF  $\Delta 0.2\%p$  등)
  - 높은 인플레이션, 급격한 금리 인상 및 경기 불확실성 증대로 소비자심리지수는 6월 이후 100을 밑도는 중
    - 다만 방역 해제 이후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등의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부문 소비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 (한국은행)
  - 13년 연속 무역흑자를 유지해왔지만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 마이너스 무역수지 기록 예상
    - \* 무역수지(억 달러): ('22.3) 1.2  $\rightarrow$  (4)  $\Delta 24.8$   $\rightarrow$  (5)  $\Delta 15.9$   $\rightarrow$  (6)  $\Delta 25.0$   $\rightarrow$  (7)  $\Delta 50.8$   $\rightarrow$  (8)  $\Delta 94.9$
    - '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환율이지만  $\Delta$ 세계적인 美달러 초강세,  $\Delta$ 원유 등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  $\Delta$ 최대 수출국 중국의 경기 침체·금리 인하·위안화 가치 하락 등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수출 호재' 공식 무너짐

[기관별 2022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단위 : %)



자료 : 각 기관 및 주요 IB는 국제금융센터

[소비자심리지수]



자료 : 통계청

[수출액 증감률]



자료 : 관세청 \*는 잠정치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추진 관련 국내외 경쟁법 비교 연구(1/3)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KBIZ정책연구단)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관련 카르텔 특례제도

#### ■ 공동행위 인가제도(공정거래법 제40조 제2항)

- (의의) 일정 요건 해당하는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 인가를 받으면 허용해 주는 제도

※ 부당한 공동행위가 ①불황극복 산업구조조정, ②연구·기술개발, ③거래조건 합리화, ④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할 것

- (현황) 과거 10년이상 인가받은 사례 無. 사실상 사문화 규정

#### ■ 일정한 조합의 행위(공정거래법 제118조)

- (의의)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로 구성된 조합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 다음 요건을 갖춘 조합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적용

1.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 가입, 탈퇴 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에게 이익배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 (현황) 대기업과 유효한 경쟁 실현코자 마련됐으나 현재까지 소규모사업자로 구성된 일정 조합의 행위를 이유로 인용사례 全無

\* 연매출 50~60억 업체 있으면 소규모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아님(대법원 2002두5672 판결)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기협법 제11조의2)

- (의의) 중기협동조합이 법에 정해진 공동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제한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 적용 배제
- (특징) ①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 침해한 경우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 등 공정거래법 적용  
② B2B 거래 상대방도 소비자로 포함되어 거래 조건 개선 등 공동협상 원천적 불가

### II 일본의 중소기업 카르텔 특례제도

#### ■ 공동행위 인가제도 폐지

- 우리나라 공동행위 인가제도와 유사하게 당국의 인가를 받은 카르텔(불황극복 카르텔, 합리화 카르텔)을 허용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1999년 폐지

#### ■ 일정한 조합의 행위(독점금지법 제22조)

- (의의)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118조와 유사하게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로 구성된 조합이 일정 요건 충족시 독점금지법 적용 배제하고 있음

※ 다음 요건을 갖추어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합 행위는 독점금지법 적용 배제. 다만,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또는 경쟁을 제한하여 부당하게 대가를 인상하는 경우 적용

1.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 목적
2. 임의 설립되고, 조합원 임의 가입, 탈퇴 가능
3.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에게 이익분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추진 관련 국내외 경쟁법 비교 연구(2/3)

- (차이점) 우리나라와 달리 독점금지법 적용 배제되는 조합의 기준을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등 협동조합법 제7조(사적독점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다음 조합은 독점금지법(제22조 제1호)상 소규모 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조합으로 본다.

1.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3억엔(소매업 또는 서비스업 5천만엔, 도매업 1억엔)을 초과하는 법인이 아닌 사업자
2. 상시 종업원 수가 3백명(소매업 50명, 도매업 또는 서비스업 1백명)을 넘지 않는 사업자

- (요건) ① 경쟁 중소기업간 합의 또는 기업협회의 결의, ② 그 목적이 경제프로세스 합리화, ③ 이를 통해 중기 경쟁력 강화, ④ 시장경쟁을 크게 제한하지 않아야 함

- 중대한 경쟁 제한여부 임계값 설정(시장점유율 10~15%)
- 당해 사업자가 카르텔 해당여부 자체판단토록 하여 사실상 자율

### III 독일의 중소기업 카르텔 특례제도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유럽기능조약(TFEU)과 독일 경쟁제한금지법(GWB)을 통해 카르텔 규율. 회원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약은 TFEU과 GWB 동시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협약은 GWB가 적용

#### ■ 일반 카르텔 금지 면제제도(GWB 제2조)

- (의의) 사업자간 협정, 사업자단체 결정 또는 담합 행위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카르텔 금지에서 면제하는 제도
- (요건) ① 상품 생산 또는 유통의 개선, 기술적·경제적 진척에 기여하고, ② 이익을 소비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할 것, ③ 경쟁제한성이 없을 것

#### ■ 중소기업 카르텔 면제제도(GWB 제3조)

- (의의) 중소기업간 협력은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자로 성장하게 하고, 대기업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2005년 도입

\* GWB 제3조는 제2조보다 더 관대한 면제 제도

### IV 호주와 미국의 중소기업 카르텔 특례제도

◆호주는 경쟁소비자법(Competition and Consumer Act)상 중소기업이 집단으로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

◆미국은 특별한 중소기업 특례 규정 없음

#### ■ 호주의 중소기업 단체교섭제도

- (의의) 둘 이상의 기업이 집단적으로 거래상대방과 가격을 포함한 거래조건에 관하여 협상하는 제도
  - 경쟁소비자위원회는 거래 상대방과 교섭력 증가, 협상 관련 거래비용 절감 등 순기능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단체교섭 허용
  - 당초 특정 사안에 대한 면제방식인 개별면제만 허용 → 2021.6.부터 특정 대상에 금지를 일괄 해제하는 일괄면제 방식 추가 도입
- (개별면제) 경쟁소비자위원회에 ‘단체교섭 통지’를 하거나 그로부터 ‘단체교섭 승인’을 받아야 함
  - ‘통지’는 경쟁소비자위원회가 일정기간내 이의가 없으면 카르텔 허용, 반면 ‘승인’은 일정한 내용을 승인받아야 가능
  - ‘승인’의 경우만 집단적 거래거절(보이콧) 가능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추진 관련 국내외 경쟁법 비교 연구(3/3)

- (일괄면제) 경쟁소비자위원회가 카르텔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정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수 있는 제도
  - 대상 : 단체의 규모 제한없으나 구성사업자는 연간 매출액 1,000만 호주달러 이하여야 함. 단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와 연료소매업체는 매출액 제한 없음
  - 요건 :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지 않거나 부작용보다 더 큰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함
- 미국의 제도
  - 법률적으로 카르텔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규정 없음
    -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소비자 선호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쟁체제 보호하는 것이 중소기업에게도 이익으로 판단
  - 다만, FTC와 법원은 중소기업은 시장지배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작으므로 시장점유율 20~30% 이내를 안전구역으로 간주
    - 안전구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행위라도 ①직접 효과분석 통해 경쟁제한성이 있는 경우, ②경성담합의 경우에는 처벌 가능
- 경쟁법 적용이 배제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기준 명확화
  - (해외사례) 일본은 소규모 사업자로 구성된 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대해 경쟁법 적용을 배제. 나아가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을 중협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소규모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의 경쟁법 적용 배제규정이 있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어 배제 여부 예측 불가
  - (개선방안) 공정거래법 제118조 제1호의 소규모 사업자 기준을 일본의 중협법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명시(제11조의2 개정)
- 단체협약 제도 도입
  - (해외사례) 호주는 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를 위해 협회, 협동조합 등에 위임하여 거래조건 등 단체 교섭을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단체협약 제도가 없고, 공동행위 규제는 엄격 운영
  - (개선방안)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합의 업무 중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 문구를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로 변경 (제35조 제1항 제7호 개정)

### V 시사점 및 정책제언

◆중기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은 소비자 기본법상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만 카르텔 적용되는 개정안 발의(우원식, 2021. 6) 중이나, 해외사례 참조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 필요

# [부록] 중소기업 경기전망

## 10월 전망

| 경기전반 | 생산 | 내수판매 | 수출 | 영업이익 | 자금사정 | 원자재 | 설비 | 재고 | 고용 |
|------|----|------|----|------|------|-----|----|----|----|
|      |    |      |    |      |      |     |    |    |    |

— 최근3년동월평균

— '22.10월



■ '22년 10월 中企경기전망지수 85.1로 전월대비 1.9p 상승해 2개월 연속 반등

-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와 소비심리 회복세에 힘입어 전월대비 제조업은 1.0p, 비제조업은 2.3p 상승
- 8월 중소기업 평균가동률은 전년동월비 0.9%p 증가한 71.8%

■ 최근 3년간 동월 SBHI\* 항목별 평균과 비교한 결과 수출과 원자재 전망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이전 3년 평균치보다 개선 기대

- 고환율,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현상이 수출 경기 체감지수에 반영

\* 100 초과시 긍정 전망 / 설비, 재고, 고용은 역계열 해석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 9월 동향

### 국제유가

한국석유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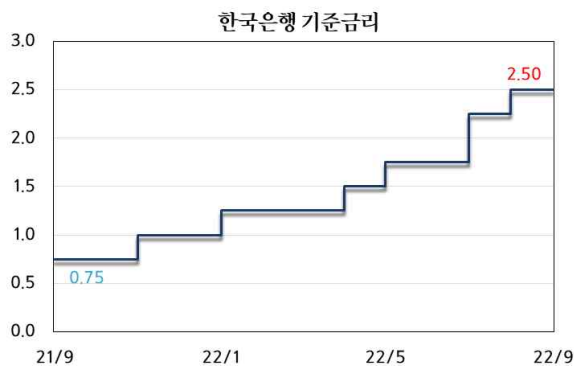
### 환율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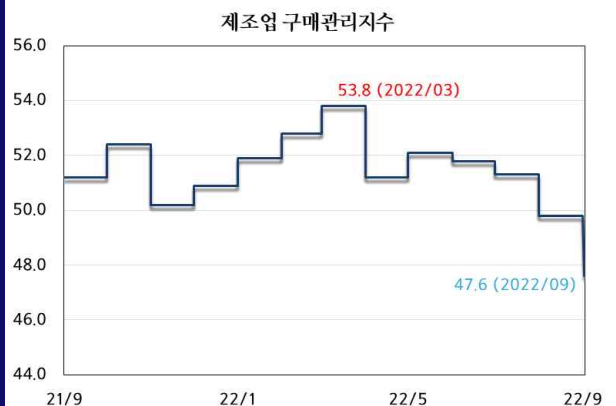
### 금리

한국은행



### PMI

Investing.com



\* 지수>50 : 경기확장, 지수<50 : 위축

KBIZ중소기업연구소는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연구주제 제안
- 기고 및 연구진 참여 신청 (이력서)
- KBIZ정책브리프 운영방안

기타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또는 문의 주실 분들은  
kbizlab@kbiz.or.kr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